##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



[시행 2017. 7. 26.] [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, 2017. 7. 26., 타법개정]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(사이버침해대응과) 044-202-6465 ,6466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칙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보공유·분석센터의 기술인력의 자격요건 등) ① 「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19조 제1항에 따른 영 별표 2 나목에서 "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자격·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기술인력"이란 별표의 자격기준을 갖춘 기술인력을 말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3. 3. 24., 2017. 7. 26.>

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별표에 따른 기술인력 중 고급기술인력으로서의 전문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비고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 분야, 정보시스템 보안 분야 또는 특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하는 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<개정 2013. 3. 23, 2013. 3. 24, 2017. 7. 26.>

[전문개정 2011. 4. 6.]

제3조 삭제 <2017. 5. 4.>

**제4조** 삭제 <2011. 4. 6.>

**제5조** 삭제 <2011. 4. 6.>

**제6조** 삭제 <2011. 4. 6.>

**제7조** 삭제 <2011. 4. 6.>

**제8조** 삭제 <2011. 4. 6.>

제9조 삭제 <2011. 4. 6.>

제10조 삭제 <2011. 4. 6.>

**제11조** 삭제 <2011. 4. 6.>

제12조 삭제 <2011. 4. 6.>

제13조 삭제 <2011. 4. 6.>

부칙 <제1호,2017. 7. 26.>(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

제6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③ 까지 생략

3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"미래창조과학부령"을 "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미래창조과학부장관"을 "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"으로 한다.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별표 비고 제1호가목·나목, 같은 표 비고 제2호·제3호, 같은 표 비고 제4호라목 및 같은 표 비고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중 "미래창조과학부장관"을 각각 "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"으로 한다.

③9 부터④1 까지 생략